

# 산업안전보건법중 개정법률(안)

- 10월 18일 입법예고된 내용 -

[지난호에 이어]

현행법률	개정법률(안)
<p>제43조(건강진단) ①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.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.</p> <p>②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사업주가 지정한 의사(치과의사를 포함한다)의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의사에 의하여 제1항의 건강진단에 상당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.</p> <p>③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(채용시의 건강진단을 제외한다)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.</p> <p>④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.</p> <p>⑤ 사업주는 제1항 및 제4항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, 작업의 전환,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측정의 실시, 시설·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p>⑥ &lt;생략&gt;</p> <p>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, 건강진단의 회수·검사항목·검진비용, 건강진단 의료기관의 지정요건·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.</p> <p>⑧ 제15조의2의 규정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료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안전관리대행기관"은 이를 "건강진단의료기관"으로 본다.</p>	<p>제43조(건강진단) ① 사업주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 _____ _____ 있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때에 _____</p> <p>②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.</p> <p>③ 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사업주가 정한 의사(치과의사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의사 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제1항 및 제2항의 건강진단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.</p> <p>④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⑤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·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사후관리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⑥ _____</p> <p>⑦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근로자 건강의 보호·유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</p> <p>⑧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대상, 실시시기 및 실시주기, 실시절차, 검사항목의 종류 및 수가, 건강진단기관의 지정·관리,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 실시결과와 통보 및 보고 기타 건강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.</p> <p>⑨ 제15조의2 규정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안전관리대행기관"은 이를 "건강진단기관"으로 본다.</p>
<p>&lt;신설&gt;</p>	

현행 법률	개정 법률(안)
제 6 장 감독과 명령	제 6 장 감독과 명령
<p>제51조(감독상의 조치) ① ~ ⑤ &lt;생략&gt;</p> <p>⑥ 노동부장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등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건설물이나 또는 그 부속건설물·기계·기구·설비·원재료의 대체·사용중지·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기타 <b>필요한 조치</b>를 명할 수 있다.</p> <p>⑦ &lt;생략&gt; 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&lt;신설&gt;</p> <p>⑧ &lt;생략&gt;</p>	<p>제51조(감독상의 조치) ① ~ ⑤ &lt;생략&gt;</p> <p>⑥ _____ _____</p> <p>_____ 안전·보건상 필요한 조치 _____</p> <p>⑦ _____</p> <p>⑧ 노동부장은 이 법을 위반한 자에게 당해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는 명령을 처분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내용 및 그 시정기간 등을 명시한 시정명령서를 처분대상자에게 우편 등으로 송부하여야 한다.</p> <p>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서를 받은 자는 당해 시정명령서에 적시된 위반행위를 시정한 후 즉시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⑩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서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⑪ &lt;생략&gt;</p>
제 7 장 산업재해예방기금	제 7 장 산업재해예방기금
<p>제56조(기금의 용도)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</p> <p>1. <b>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관리기금에의 출연금</b></p> <p>2. ~ 4. &lt;생략&gt;</p> <p>② &lt;생략&gt;</p>	<p>제56조(기금의 용도) ① _____</p> <p>1. 한국산업안전공단에의 출연금</p> <p>2. ~ 4. &lt;생략&gt;</p> <p>② &lt;생략&gt;</p>
제 8 장 보 칙	제 8 장 보 칙
<p>제63조(비밀유지)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행하는 자,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<b>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</b>를 검토하는 자, <b>제43조</b>의 규정에 의한 건강 진단을 행하는 자,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자,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를 검토하는 자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·보건진단을 행하는 자 및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검토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 다만,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	<p>제63조(비밀유지) _____</p> <p>_____ 유해·위험성조사결과보고서 _____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검토하는 자, 제43조 _____</p> <p>_____</p> <p>_____</p> <p>_____</p>
제 9 장 벌 칙	제 9 장 벌 칙
<p>제67조(벌칙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1. &lt;생략&gt;</p> <p>2. <b>제38조제5항, 제48조제4항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</b>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67조(벌칙) _____</p> <p>1. _____</p> <p>2.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, 제2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 사망재해를 발생시킨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</p>

현행법률	개정법률(안)
<p>제67조의2(벌칙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제33조제1항 내지 제4항, 제34조제2항, 제35조제1항·제3항, 제38조제3항, 제46조 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</li> <li>2.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기계·기구</li> <li>3. 제34조제4항, 제38조제4항, 제43조제4항, 제49조의2제3항 또는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</li> </ol> <p>제68조(벌칙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제29조제2항, 제34조제5항, 제43조제1항, 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(유자격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작성·제출한 자를 제외한다), 제49조의2제1항, 제52조의6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</li> <li>2. 제34조의4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증표 사용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증표 또는 이와 유사한 증표를 사용하거나 안전증표 사용의 인증에 관한 광고를 한 자 (신설)</li> </ol> <p>제69조(벌칙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2. &lt;생략&gt;</li> <li>3. 제40조제4항, 제41조제4항, 제49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·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</li> </ol> <p>제70조(벌칙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제12조, 제13조제1항, 제15조제1항, 제16조제1항, 제17조제1항, 제18조제1항, 제19조제1항·제4항, 제21조, 제29조제1항·제3항·제5항,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, 제32조제1항(제2호 및 제3호의 자를 제외한다), 제36조제1항, 제39조, 제44조제2항, 제49조의2제2항, 제50조제3항·제4항 또는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</li> <li>2. 제15조제3항, 제16조제3항 또는 제5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</li> <li>3.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음에도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 근로자대표를 임회시키지 아니한 자</li> <li>4. ~ 5. &lt;생략&gt;</li> </ol> <p>제72조(과태료) ①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</p>	<p>금에 처한다.</p> <p>제67조의2(벌칙) _____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제33조제2항·제3항·제9항, 제34조제2항·제8항, 제35조제1항·제7항 _____</li> </ol> <p>삭제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. 제33조제10항, 제34조제9항, 제35조제8항, 제38조제4항, 제43조제2항 _____</li> </ol> <p>제68조(벌칙) _____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제29조제2항, _____</li> </ol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. 제33조제6항, 제34조제6항, 제34조의4 또는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</li> <li>3. 제3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증표제거 명령을 위반한 자</li> </ol> <p>제69조(벌칙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~ 2. &lt;생략&gt;</li> <li>3. 제40조제5항 _____</li> </ol> <p>제70조(벌칙) _____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제29조제1항·제3항 _____</li> </ol> <p>&lt;삭제&gt;</p> <p>&lt;삭제&gt;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4. ~ 5. _____</li> </ol> <p>제72조(과태료)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,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제30조제1항·제3항 또는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</li> </ol>

현행 법률	개정 법률(안)
<p>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&lt;생략&gt;</li> <li>2.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</li> <li>3.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</li> </ol> <p>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&lt;생략&gt;</li> <li>2. 제25조, 제43조제2항 또는 제52조의8의 규정에 위반한 자</li> <li>3.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</li> <li>4. 제32조제1항(제1호 및 제4호의 자를 제외한다)의 규정에 위반한 자</li> <li>5. &lt;삭제 2000.1.7&gt;</li> <li>6.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해성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</li> <li>7. &lt;생략&gt;</li> <li>8. 제42조제1항 또는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를 한 자</li> <li>9. ~ 11. &lt;생략&gt;</li> <li>12. 제6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</li> </ol> <p>④ ~ ⑦ &lt;생략&gt;</p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. 제41조제4항, 제49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·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</li> <li>3.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</li> <li>4.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</li> </ol> <p>② _____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_____</li> <li>2. 제10조의2제1항, 제12조, 제13조제1항, 제14조제1항, 제15조제1항, 제16조제1항, 제17조제1항, 제18조제1항, 제19조제1항·제4항, 제21조제1항, 제29조제5항,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, 제32조제1항(제2호 및 제3호의 자를 제외한다), 제36조제1항, 제42조제5항, 제43조제6항, 제44조제2항, 제49조의2제2항, 제50조제3항·제4항 또는 제52조의4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</li> <li>3. 제15조제3항, 제16조제3항 또는 제51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</li> <li>4. 제42조제1항 또는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·건강진단을 할 때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음에도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키지 아니한 자</li> </ol> <p>③ _____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_____</li> <li>2. 제25조, 제30조제4항, 제32조제1항(제1호 및 제4호의 자를 제외한다), 제41조제2항·제3항·제7항, 제43조의2제4항, 제51조제9항·제10항, 제52조의8 또는 제6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</li> </ol> <p>삭제 삭제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5. _____</li> <li>6. _____ 유해·위험성 조사결과보고서를 _____</li> <li>7. _____</li> <li>8. _____ 제43조제4항 _____</li> </ol> <p>9. ~ 11. _____</p> <p>삭제</p> <p>④ ~ ⑦ _____</p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0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건설기술관리법중 제26조의3 제2항을 동조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보며,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둔 것으로 본다.

제3조(적용례) 제7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노동부장관이 행한 명령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4조(벌칙등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 